

『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기업사랑실무위원회를 기업사랑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, 상위법 제·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기업사랑위원회와 기업사랑실무위원회 일원화 및 기능 정비

- 위원회의 기능 (안 제7조)
- 기업사랑실무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 (중건의 제8조~제8조의3 삭제)

나. 중견기업법 제정에 따른 최고기업인 선정분야 변경(안 제10조)

(당초) 시상인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 1명

(변경) 시상인원은 대기업·중견기업에서 1명, 중소기업에서 1명

다. 기업사랑위원회 부위원장 변경

(당초) 부위원장 : 위원 중 호선 → (변경) 부위원장 : 부시장

라.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장 및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
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 - 기업사랑실무위원회를 기업사랑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기능을 조정하고 최고기업인 선정분야를 변경하는 등 기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,
 - 위원회가 일원화 될 경우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위원 위촉 시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,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시책 발굴과 기업의견수렴 및 경기변화에 따른 동향과악이 원활해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